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60
----------	------

2025년 3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3일, 김재진 의원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5일  
다. 상정일자: 제3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3월 4일 상정·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재진 의원)

- 가. 제안이유
- 관련 법 및 동 조례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현행화하고 업무 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며, 용어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관련 법 및 동 조례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현행화함  
(안 제19조 및 제29조, 안 별표 1).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함(안 제33조).
  - 용어,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박 귀 수)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및 관계법령 기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 하고 일부 조문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행정 효율성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9조는 소방용수 등에 대해 일반용 최초단계의 요율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4년 3월 24일부터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명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29조는 여전히 ‘고시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안 제19조 및 제29조와 같이 동 조례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일 것임.

다만, 서울아리수본부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개정사항을 상당 기간 미반영하고 있는바, 조례 현행화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며, 안 별표 1과 같이 일반용 급수업종 구분을 업종 통합<sup>1)</sup>에 맞춰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

1) 공공용, 일반용 → 일반용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일반용 최초단계의 요율의”를 “일반용”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도사용자”를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날 수”를 “사용일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로서”를 “수도계량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 수”를 “사용일수”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수용가”를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사회복지수용시설, 고시원”을 “사회복지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으로, “날 수대로”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로, “부담해야”를 “징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 중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을 “미납요금×(3/100)×(체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달 일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납금(연체금 포함)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계을리 하여”를 “계을리하여”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수도사용자”를 “수도사용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용가”를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리 할”을 “처리할”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 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다중생활시설(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다만, 관광호텔 내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일반용	가.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 나.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 사용량과 운반급수 다.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

[별표 3]

**누수 등의 발생시 사용요금 정산 방법**(제26조제3항 관련)

누수량 산정	정상 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
검침량 - 정상 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한 요금을 산정한 후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수도계량기 분리설치)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u>사용자</u> 등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수도계량기 분리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수도사용자등</u>----- ----- -----.</p>
<p>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② (생 략)</p> <p>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 중 <u>일반용</u> <u>최초단계의</u> <u>요율</u>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일반용</u> ----- -----.</p>
<p>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u>수도사용자</u>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수도사용자등</u>----- ----- -----.</p>
<p>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 ③ (생 략)</p> <p>④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u>날</u> 수대로 계산</p>	<p>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사용일수</u>-----</p>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 2. (생략)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생략)

④ (생략)

제29조(세대분할) ①·② (생략)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  
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  
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등이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생략)

-----  
-----  
-----.

1. 2. (현행과 같음)

3. ----- 수도사용  
자등-----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세대분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회복지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현행  
과 같음)

② ----- 수도사용  
자등-----  
-----  
-----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체납관리) ① 수도사용자등 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 일수/월력(월력)일수)

② (생략)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33조(체납관리) ① -----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  
----- 다음 계산식에 따라 ----- 징수하여야  
-----  
-----.

----- 미납요금×(3/100)×(체납 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달 일수)

② (현행과 같음)

③ 체납금(연체금 포함)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 수도사용자등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게을리하여 -----  
-----.

제43조(정수처분) ① (생략)

② 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8조(사무위임) ①·② (생략)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체납의 징수와 정수처분·재산압류 및 해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제43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도사용자등-----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수  
도사용자등-----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사무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처리할 ----- . -----  
-----  
-----.

1. 2. (현행과 같음)